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

- 1. 2 0 1 7 년 도 서울특별시 예산안
- 2. 2017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

본회의 수정동의안 제안설명



2016.12.23.

박 운 기 (더불어민주당, 서대문2)

- 존경하는 선배·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
-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운기 의원입니다.
 - □ 의안번호 제1502호 「201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」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.
- 먼저 수정동의안 발의 사유 및 경과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8일부터 23일 현재까지 서울특 별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된 추 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의하였습니다.
- 예산안을 심의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개별의원간, 정당 간, 의회와 집행부간에 원만한 합의점 도출이 어려웠고, 그 결과 예결특위 심사기간동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본회의 의사일정을 두 차례 연장한 후「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」에 따라 의장이 시장 제출안을 본회의에 부의한바
- O 회의규칙 제66조에 근거하여 22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것입니다.
- O 수정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 - 첫째,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

- 을 다시 한번 청취하고,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액된 예산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.
- 특히,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경우, 예비심사 에서 감액된 220억원을 증액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행정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.
- 또한 서울역 7017프로젝트 추진사업의 경우에도 당초 공기가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예비심사에서 감액된 217억원 전액을 증액하여 복원한 것은 물론 「여성 더 좋은 일자리 활성화 지원사업」,「서울특별시 감염병 전문센터 설치」사업,「50+재단 및캠퍼스 운영 사업」에서 감액된 소요예산 전액을 복원하여 여성의 삶의 질 향상,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.
- 둘째,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사업에 대해 증액조정하여 관련 부서가 정책을 보다 내실있게 집행할 수 있는 재정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.
- 셋째,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부터 시민체육생활 활성화를 위한 학교시설 즉, 운동장 및 체육관을 시민에게 개방할 경우, 학교운 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60억원을 편성한 바 서울시의 경우에도 30억원을 대응편성 함으로써 서울시와 교육청 그리고 시민과일선 학교가 협치 할 수 있는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.
- 넷째, 내년도부터 기획재정부의 "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"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의 국고보조금도 연동하여 중앙부처내역을 기준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 2017년도에 한정하여 예산총칙

중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국고보조금 등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, 집행에 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입니다.

- O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.
- O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정동의안에 첨부된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03호 「2017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」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.

- □ 수정 동의안의 발의사유 및 경과과정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 위원회가 지정된 심사기간 동안 '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「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 제2항에 따라 시장 제출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바,
- □ 본 의원을 포함한 22명 이상의 의원은 「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」에 따라 수정 동의안을 발의한 것입니다.
- □ 시장 제출안은 내년도부터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가 「지방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른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15개 기금(21개 계정), 총 2조 3,940억원을 운용하고자 하는 것인 바
- □ 수정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자 기후변화기금의 수입 및 지출 계획액을 각각 17억 4,200만원씩 증액조정 하는 등 3개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증·감 조정한 것입니다.
- O 아무쪼록 수정동의안의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·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니다. 감사합니다.